

## 복지위원회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태영·박영준·채현탁\*

###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역사회 내 요보호자의 사망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이웃의 무관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사회복지계에도 복지전달체계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02년 2월에 대구의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딸과 함께 살던 40대의 이혼녀가 외부와의 관계단절로 굶주려 오다가 숨진 사건이나, 같은 해 3월에 구미의 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사체의 부패 정도로 보아 1~2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보호자를 119대원이 발견한 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 발생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요보호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내지 사회복지기관 직원간의 연결고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요보호자 간의 연결 접점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역 내 요보호자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계획, 무선페이징시스템 등의 사업을 계획·실행하여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대구광역시 달서구), 독거노인 생활상태 일일점검제도(경상남도 밀양시) 등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

\* 박태영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영준 : 대구미래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채현탁 : 영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요보호자 사망 사건, 특히 노인과 관련한 고독사가 1960년 말부터 사회문제화 되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일본의 경우 민생위원·아동위원 제도의 시행으로 복지전달체계상에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민생위원·아동위원제도를 참고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법 제3조 2와 시행령 제10조에 복지위원제도를 명시해 놓았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제도 도입 기반의 미비, 적극적인 제도 도입 노력의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사문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복지위원제도는 ①지역사회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수 있고, ②지역사회복지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③이웃에 대해 관심 있는 주민에게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것(박태영, 2003)으로 그 도입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단지 복지위원제도의 도입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선언적인 연구 수준(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박태영, 2002; 박태영, 2003)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위원제도의 도입은 요보호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의 담당자와 같은 일차적인 사회복지조직과의 연결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박태영, 2003 : 9). 이를 통해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의 방치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예방하고 취약한 요보호자에게 신속히 대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요보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지역사회복지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주민참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공식매개체로써 복지위원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복지위원제도의 법적 근거

복지위원제도는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국가건설의 이념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의 요청과 계층간의 균형 있는 복지수준의 요구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제기되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8 : 7). 그리고 그 당시 사회복지행정체계 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욕구 및 생활실태 파악,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인력의 확보 필요성과 사회복지관계 법령상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유명무실 등의 사유도 제도 마련에 따른 실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는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이들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복지위원제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는 신설 당시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속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형식적 명시에 따라 실제로 복지위원을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가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우선 이 제도에 대한 사회복지관계자 및 관계당국의 이해 부족과 제도의 중요 실행기구인 기초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등이 가장 큰 사유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제도를 지원해줄 사회복지전달체계내의 기반이 미비한 것 또한 중요한 미도입사유로 볼 수 있다. 특히 복지위원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하나 2003년 10월 현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총 232곳 중 69곳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복지위원제도는 형식적 제도 규정에만 머무르고 있다.

## 2. 요보호자와 복지서비스공급자간 연결접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크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요보호자와 복지서비스 공급자간의 연결접점은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반장, 아동위원, 민·관연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요보호자 생활 점검 제도, 소방본부의 무선페이징시스템 등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위원은 활동의 법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 영역의 경우는 여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이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표 II-1> 요보호자의 연결접점에서의 연결주체와 연결형태<sup>1)</sup>

구분	연결 주체	주요 연결접점 형태
공공영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요보호자의 조사, 개별상담, 사후관리
	통·반장	가구 방문, 읍·면·동 신고(통반장을 활용한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방문 보호제)
	아동위원	관할구역안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복지위원	관할지역안 요보호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보건복지부	민·관 연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제도
	지방자치단체	독거노인생활상태 일일점검제도(밀양시)
	소방본부	무선페이징시스템(응급신고용무선호출기)
민간영역	종합사회복지관, 단종복지관	가정방문, 지역주민(이웃, 통반장 등)의 요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의뢰
	정신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의 의뢰, 지역주민 요청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의뢰, AA회원들의 요청
	부랑인 시설	경찰, 관공서, 동사무소, 지역자치단체 등의 의뢰, 지역주민 요청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가정방문, 지역주민 요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교단체 등의 의뢰, 독거노인건강관찰사업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노인)	시·군·구·동사무소, 피출소 등의 의뢰
	아동학대센터	상담전화에 의한 신고, 현장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의 의뢰, 지역주민의 요청
	노숙자쉼터 및 시설	시·군·구·동사무소, 교회, 병원 등의 의뢰, 지역주민의 요청
	각종상담기관	상담 전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요청, 요보호자의 내방상담

1) 대구·경북·경남지역 소재 공공·민간 영역의 연결접점에 대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임. 연결주체(복지서비스공급자)의 요보호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우리나라의 요보호자와 복지서비스공급자간의 연결접점은 공공 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위치할 상대적 시간이 적고, 통반장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법률적인 역할 규정이 확실치 않으며 아동위원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경우도 대상이 노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의 경우도 각 시설·기관·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상이 선별적이며 각 시설·기관·단체의 개별성으로 지역사회 전체 차원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연결접점이 취약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 3. 일본의 민생·아동·복지위원제도의 고찰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요보호자간 연결접점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위원 제도의 법률적 규정은 일본의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영향이 컸다. 일본의 민생위원·아동위원제도는 오카야마현 지사가 만든 ‘제세고문(濟世顧問)제도’와 오사카부 지사가 만든 ‘방면위원(方面委員)제도’로부터 90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지역에 근거한 복지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厚生省 社會・援護局 兒童家庭局, 1999). 민생위원은 민생위원법에 의해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민생위원이 아동위원을 겸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민생·아동위원은 시정촌(市町村)에 설치된 민생위원추천회에서 그 전형(銓衡)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에 의해 추천된다. 민생위원·아동위원의 배치기준은 대도시에서는 220~440세대마다 1명을 기준으로 배치된다. 또한 중핵도시나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170~360세대마다 1명,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에는 120~280세대마다 1명, 그보다 작은 정촌에서는 70~200세대마다 1명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http://www.shakyo.or.jp/zenminjiren/outline/ind\\_06-bd.html](http://www.shakyo.or.jp/zenminjiren/outline/ind_06-bd.html)), 총21만명이 넘는 민생위원·아동위원이 일본 전국의 모든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

이 민생위원·아동위원의 기본적 성격으로서서는 첫째, 자주성으로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로서 자발적·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둘째, 봉사성으로서 성의를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연대감을 가지며 겸허하게 무보수로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행정기관의 업무에 협력하는 것, 셋째, 지역성으로서 일정한 지역사회(담당 구역)를 기반

으로 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全國社會福祉協議會, 2002) ①사회조사 기능, ②상담기능, ③정보제공 기능, ④연락·통보 기능, ⑤조정 기능, ⑥생활지원 기능, ⑦의견조언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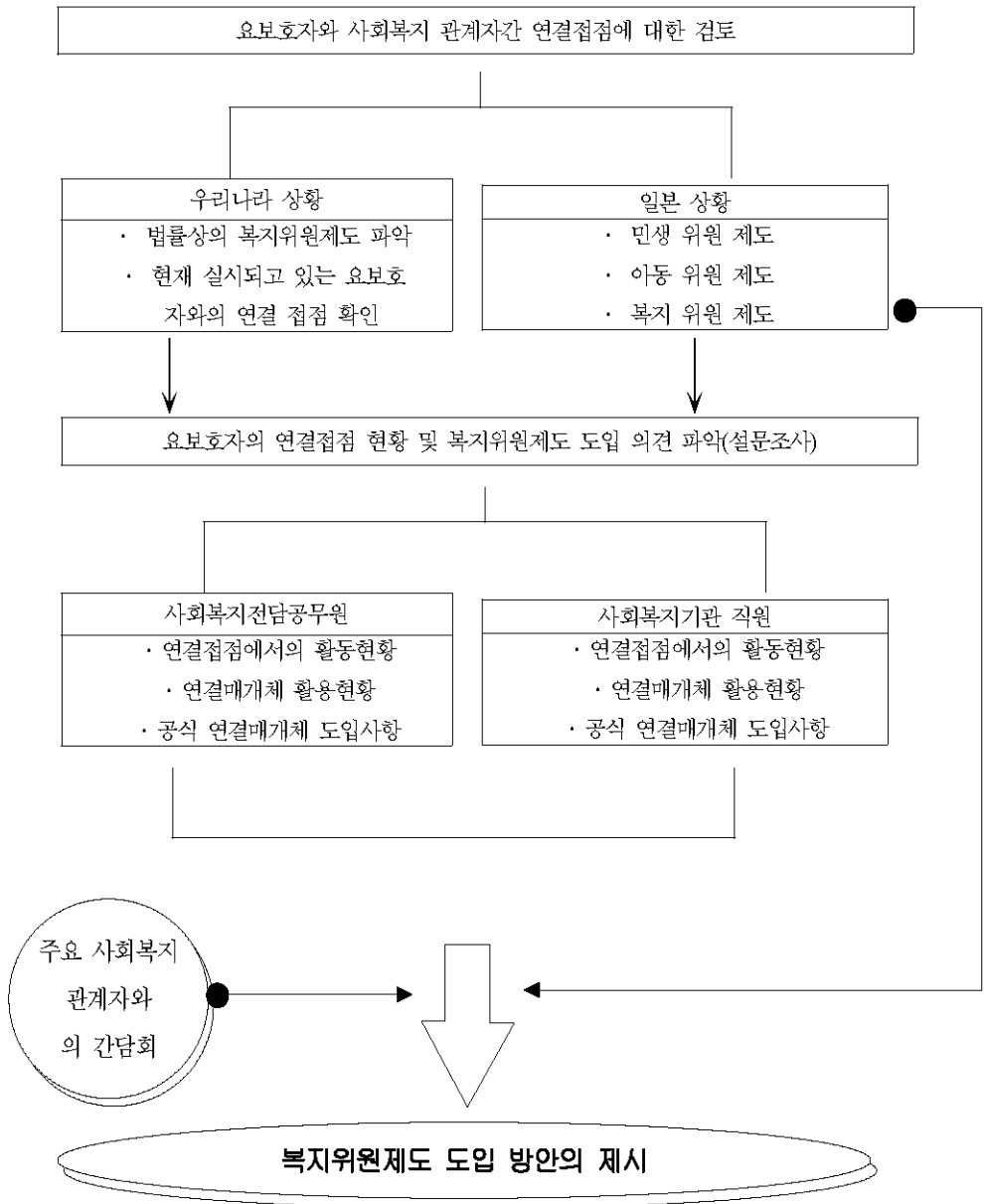
일본의 민생위원·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요구나 생활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이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과, 한사람 한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하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과 임무 속에서 어느 단계에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면 좋은 가라는 상반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협력과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그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全國社會福祉協議會, <http://www.pref.yamanashi.jp/fukushi/hokensom/>).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중에서 민생·아동위원은 지역복지의 계획을 세워 활동을 전개해 가는 핵심요소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지역사회내 주민의 다양화나 유동화가 빈번해져 낮 동안은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연령 구성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 제도의 보완책으로서 복지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민생위원·아동위원 제도와는 다르게 복지위원제도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나 규칙 또는 설치기준을 만들어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속적이고 중첩적으로 강화함으로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 연결접점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진행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 진행과정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25명(2003년 11월말 현재)과 사회복지기관 즉, 지역사회복지관 25개소, 노인복지회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의 사회복지사 총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과 연구자들이 사회복지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한 후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관리자 및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수정·보안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월 6일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의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배부·조사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에는 해당 기관 주요관리자에게 의뢰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총 325부를 배부하여 217부가 회수됨으로써 66.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사회복지기관 직원에게는 총 321부를 배부하여 167부가 회수되어 52.0%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총 402부였으나 설문지의 미작성, 불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총 384부를 분석·처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위원제도의 도입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복지관계자와의 간담회를 2004년 2월 11일에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과 사회복지기관 관리자 5명과 본 연구의 연구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402부 중 설문지가 부실한 18부를 제외한 384부를 사회과학전문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ver.10을 이용하여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통계분석인 빈도분석(Frequency)과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속성에 따른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을 하였다.



## IV. 조사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서 사회복지 관계자의 활동 현황,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연결매개체 활용 현황,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공식 연결매개체 도입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67.3%, 남성이 32.7%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근무지역은 영구 임대주택인 경우 22.5%, 일반지역인 경우가 77.5%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사회복지 총근무 연수는 평균 3.62년(SD=2.92)이었으며, 현근무 연수는 2.28년(SD=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여성이 57.0%, 남성은 43.0%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또한 7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무지역은 일반지역이 57.8%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지역도 42.7%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기관 직원의 총근무 연수는 평균 7.41년(SD=5.81)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다 3.79년 정도 더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근무 연수는 2.09년(SD=3.40)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70	32.7	68	43.0
	여	144	67.3	90	57.0
	계	214	100.0	158	100.0
자 격 증	사회복지사 1급	193	89.8	125	79.6
	사회복지사 2급	22	10.2	21	13.4
	사회복지사 3급	-	-	-	-
	없 음	-	-	11	7.0
	계	215	100.0	157	100.0

<표 IV-2> 계속

항 목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근무지역	일반지역	162	77.5	90	57.3
	영구입대주택지역	47	22.5	67	42.7
	계	209	100.0	157	100.0
사회복지근무 연수	총근무년수 평균	3.6266	2.9290	7.4122	5.8188
	현근무년수 평균	2.2872	2.2168	2.0936	3.4010

## 2.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서 사회복지관계자의 활동 현황

### 1) 긴급 지원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긴급지원 필요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면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세대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독거노인세대 33.8%, 노손세대가 10.1% 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은 독거노인세대가 35.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세대 18.1%, 만성질환세대가 17.5%, 노손세대가 11.9%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세대에서 일정 수준의 클라이언트가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긴급 지원 클라이언트가 만성질환세대와 독거노인세대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표 IV-3>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긴급지원 필요 클라이언트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독거노인세대	70	33.8	57	35.6
장애인세대	12	5.8	29	18.1
모자세대	2	1.0	4	2.5
부자세대	3	1.4	11	6.9
만성질환세대	82	39.6	28	17.5
노손세대	21	10.1	19	11.9
소년소녀가장세대	5	2.4	2	1.3
부랑인	6	2.9	5	3.1
기타	6	2.9	5	3.1
계	207	100.0	160	100.0

이를 통해 볼 때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의 연결접점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만성질환세대, 독거노인세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클라이언트의 발견 경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재 근무처에서 클라이언트 발견경로에 따른 사례수를 살펴보면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발견한 평균 사례수는 53.38케이스(SD=58.6)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발견한 평균 사례수는 7.76케이스(SD=10.45)에 불과했으며 클라이언트의 직접연락에 의한 사례수가 32.32케이스(SD=37.30), 지역사회내 통반장, 이웃, 친척, 경찰 등의 소개에 의한 사례수가 14.38케이스(SD=21.2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견한 전체 사례 수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사례수는 30케이스로 나타났다.

<표 IV-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클라이언트 발견경로 사례수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N	M	SD	median
발견한 전체 사례수	157	53.3822	58.6526	30.000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발견한 사례수	157	7.7692	10.4541	3.0000
- 클라이언트의 직접연락에 의한 사례수	157	32.321	37.300	20.000
- 지역사회내 통반장, 이웃, 경찰 등의 소개에 의한 사례수	157	14.3846	21.2471	7.5000

사회복지기관 직원의 클라이언트의 발견경로에 따른 사례 수를 살펴보면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발견한 평균 사례수는 49.88케이스(SD=66.56)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직접 발견한 평균 사례수는 21.88케이스(SD=39.41)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접 발견 평균 사례수 7.76케이스(SD=10.45)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면 클라이언트의 직접연락에 의한 사례수는 14.04케이스(SD=28.11)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접 연락 사례수 32.32(SD=37.30)보다 2배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내 통반장, 이웃, 친척, 경찰 등의 소개에 의한 사례수는 14.75케이스(SD=25.81)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해당 사례수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견한 전체 사례 수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사례수는 20케이스로 나타났다.

<표 IV-5> 사회복지기관 직원의 클라이언트 발견경로 사례수

구 분	사회복지기관직원			
	N	M	SD	median
발견한 전체 사례수	105	49.8857	66.5661	20.0000
- 사회복지기관직원이 직접 발견한 사례수	105	21.8812	39.4102	7.0000
- 클라이언트의 직접연락에 의한 사례수	105	14.040	28.116	5.000
- 지역사회내 통반장, 이웃, 경찰 등의 소개에 의한 사례수	105	14.7525	25.8137	6.0000

이 조사결과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클라이언트의 직접연락에 의한 사례수가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사회복지기관 직원은 직접발견한 사례수가 많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직접연락에 의한 사례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신청 급여의 강제로 클라이언트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결과라 해석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접 발견에 의한 사례수가 적은 것은 클라이언트 관리 업무의 치중으로 인한 전담공무원의 발견 경로의 취약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직원 모두에서 클라이언트의 발견을 지역사회내 통반장, 이웃, 친척, 경찰 등의 소개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요보호자와 사회복지사간 연결점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와 함께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 신규 클라이언트의 정보파악 소요시간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신규클라이언트의 정보파악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2시간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4시간이 24.6%, 48시간이 24.2%, 즉시가 9.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에서는 48시간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7.7%, 72시간이 12.3%, 즉시가 11.7%로 나타났다.

&lt;표 IV-6&gt;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신규클라이언트 정보파악 소요시간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즉시	19	9.2	18	11.7
24시간	51	24.6	58	37.7
48시간	50	24.2	59	38.3
72시간	87	42.0	19	12.3
계	207	100.0	154	100.0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직원간의 정보파악의 범위, 정보파악의 책임성, 그리고 타 업무로 인한 즉시성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직원 보다 클라이언트의 정보 파악에 포함된 내용이 다소 광범위할 수 있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정보 파악과 더불어 행정적 책임성을 수반하게 되며, 사례관리수가 많아 신규 클라이언트라도 즉시적으로 반응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것은 사회복지관계자가 신규 클라이언트의 예측할 수 없는 긴급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복지관계자가 신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요청된다.

### 3.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연결매개체 활용 현황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의 연결접점에서 사회복지관계자가 연결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신규 클라이언트의 발견과 기존 클라이언트의 관리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우선 신규 클라이언트 발견시의 연결매개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통반장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웃주민이 24.8%, 동료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0.1%, 사회복지기관시설직원이 6.5% 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기관 직원은 이웃주민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각각 23.0%, 사회복지기관시설직원이 22.0%, 통반장이 13.5%, 자원봉사자가 9.2%,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클라이언트 관리시의 연결매개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신규 클라이언트 발견시와 마찬가지로 통반장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료사회복지전담공무원 24.3%, 이웃주민이 15.8%, 사회복지기관시설직원이 12.0% 등을 차지하

였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관시설직원이 23.3%, 자원봉사자가 18.7%, 이웃주민이 15.2%, 통반장은 11.3% 등을 차지하였다.

<표 IV-7>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요보호자와의 연결매개체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신규 발견	기존 관리	신규 발견	기존 관리
통반장	193	159	38	32
	(52.6)	(43.3)	(13.5)	(11.3)
이웃주민	91	58	65	43
	(24.8)	(15.8)	(23.0)	(15.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	81	65	67
	(10.1)	(24.3)	(23.0)	(23.7)
사회복지기관시설직원	24	44	62	66
	(6.5)	(12.0)	(22.0)	(23.3)
경찰	6	-	3	-
	(1.6)	-	(1.1)	-
종교단체	2	2	7	7
	(0.5)	(0.5)	(2.5)	(2.5)
병원관계자	-	-	4	7
	-	-	(1.4)	(2.5)
자원봉사자	1	6	26	53
	(0.3)	(1.6)	(9.2)	(18.7)
시민단체	1	2	1	1
	(0.3)	(0.5)	(0.4)	(0.4)
기타	12	7	11	7
	(3.3)	(1.9)	(3.9)	(2.5)
계	367	367	282	283
	(100.0)	(100.0)	(100.0)	(100.0)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라 통반장의 활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경우 공공 복지행정 전달체계로서 통반장을 행정의 최일선 인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회복지기관은 통반장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물들을 신규 클라이언트 발견시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직원의 활용이 높았는데, 이것은 공공 사회복지영역 보다 상대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영역에서 사회복지전문직간의 연계 및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새로운 연결매개체 도입 관련 사항

##### 1)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필요정도

클라이언트 발견시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필요 정도는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클라이언트 발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53.1%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관 직원은 61.3%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존 클라이언트 관리시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0.6%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관 직원도 86.9%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필요정도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신규 발견	기존 관리	신규 발견	기존 관리
불필요	7	9	-	-
	(3.3)	(4.3)	-	-
조금필요	15	8	5	1
	(7.2)	(3.8)	(3.1)	(0.6)
보통	76	45	57	20
	(36.4)	(21.3)	(35.6)	(12.5)
필요	54	72	59	78
	(25.8)	(34.1)	(36.9)	(48.8)
매우필요	57	77	39	61
	(27.3)	(36.5)	(24.4)	(38.1)
계	209	211	160	160
	(100.0)	(100.0)	(100.0)	(100.0)

## 2)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자격 관련 사항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자격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지역에 거주하며 실정에 밝은 사람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21.3%,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19.4%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직원도 지역에 거주하며 실정에 밝은 사람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29.7%, 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24.1%로 나타났다.

<표 IV-9>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자격 관련 사항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지역에 거주하며 실정에 밝은 사람	128	59.3	73	46.2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42	19.4	47	29.7
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6	21.3	38	24.1
계	216	100.0	158	100.0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클라이언트와의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자격은 지역성과 지역 관심도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을 복지수요 파악, 상담, 복지정보 제공, 연락·통보, 조정, 생활 지원, 의견 제안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각각의 역할 적극성 정도를 살펴보면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수요 파악의 역할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의 역할은 보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정보 제공의 역할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락 및 통보의 역할 또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정의 역할은 보



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원의 역할 또한 보통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견 제안의 역할도 보통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직원의 경우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복지수요 파악의 역할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의 역할은 보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정보 제공의 역할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락 및 통보의 역할 또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정의 역할은 보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원의 역할 또한 보통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견 제안의 역할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수행수준

구 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직원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계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계
복지수요 파악	4	8	65	72	60	209	1	8	42	58	45	154
	1.9	3.8	31.1	34.4	28.7	100.0	.6	5.2	27.3	37.7	29.2	100.0
상담	6	14	80	68	39	207	2	11	59	47	37	156
	2.9	6.8	38.6	32.9	18.8	100.0	1.3	7.1	37.8	30.1	23.7	100.0
복지정보 제공	4	11	65	74	55	209	-	4	49	61	43	157
	1.9	5.3	31.1	35.4	26.3	100.0	-	2.5	31.2	38.9	27.4	100.0
연락·통보	6	13	50	81	62	212	-	7	49	62	37	155
	2.8	6.1	23.6	38.2	29.2	100.0	-	4.5	31.6	40.0	23.9	100.0
조정	6	16	81	70	35	208	-	15	70	49	20	154
	2.8	7.4	37.3	32.3	16.1	95.9	-	9.7	45.5	31.8	13.0	100.0
생활 지원	6	26	84	54	38	208	2	22	57	55	20	156
	2.9	12.5	40.4	26.0	18.3	100.0	1.3	14.1	36.5	35.3	12.8	100.0
의견 제안	8	15	85	63	33	204	1	12	50	66	27	156
	3.9	7.4	41.7	30.9	16.2	100.0	.6	7.7	32.1	42.3	17.3	100.0

지역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수행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수행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 중 복지수요 파악( $t=-2.348$ )과 복지정보제공( $t=-2.196$ )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의 경우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수행에 있어 복지수요 파악과 복지정보 제공에서 지역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이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IV-11> 지역에 따른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수행수준 차이(사회복지기관 직원)

요인	구분	N	M	SD	t	p
복지수요 파악	일반지역	85	3.7294	.9308	-2.348	.020*
	영구임대	65	4.0769	.8534		
상담	일반지역	86	3.5814	.9263	-1.616	.108
	영구임대	66	3.8333	.9858		
복지정보제공	일반지역	87	3.7701	.7424	-2.196	.030*
	영구임대	66	4.0606	.8923		
연락·통보	일반지역	86	3.8256	.8288	.184	.854
	영구임대	65	3.8000	.8696		
조정	일반지역	85	3.4941	.8677	.013	.990
	영구임대	65	3.4923	.8125		
생활지원	일반지역	87	3.4483	.9371	.113	.910
	영구임대	65	3.4308	.9515		
생활지원	일반지역	86	3.6395	.8389	-.720	.473
	영구임대	66	3.7424	.9167		

#### 4) 클라이언트 지원인력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라 클라이언트 몇 명당 지원인력 한명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평균이 61.00명( $SD=53.90$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기관 직원은 17.88명( $SD=29.68$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평균은 39.44명( $SD=41.79$ )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값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50명,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10명으로 나타났다.

&lt;표 IV-12&gt; 사회복지관계자에 따른 클라이언트 지원 희망인력(기술통계)

구분	기술통계			
	N	M	SD	Median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5	61.0049	53.9043	50.0000
사회복지기관 직원	152	17.8816	29.6815	10.0000
계	357	39.4432	41.7929	30.0000

그리고 지원인력 한명 당 희망 클라이언트 수를 20명 이하, 20명~50명, 50명 초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50명 초과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복지기관 직원은 반대로 20명 이하가 73.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포괄적인 사례 관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지역사회 요보호자 중심의 집중적인 사례관리(사회복지기관 직원)에서 오는 차이와 사회복지관계자간의 지원인력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역할과 지원인력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우선 제도 도입시기에는 포괄적인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활성화 관련 사항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활성화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직원 모두 적절한 지원인력간의 정기적 연계 체계의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와 지원인력간의 정기적인 연계체계의 구축, 최신복지관련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인력의 활동에 대한 지원, 지원인력의 적정한 권한 및 그에 따른 책임부여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V. 복지위원제도의 도입 방안

지역사회 내 여러 차례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의 취약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위원제도는 요보호자의 사회적 연결안전망으로서 시의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의 67.9%가 지역사회 내 요보호자와의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사회복지관계자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사례

수 중 지역사회내의 통반장, 이웃, 친척, 경찰 등의 소개에 의한 사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은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 요보호자와 사회복지관계자간의 새로운 연결매개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보호자와의 새로운 연결매개체로 복지위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복지위원제도 운영, 위원 구성, 위원 관리, 제도 도입 체계 등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1. 제도 운영

### 1) 법적 근거

복지위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주로 복지위원 제도 도입의 근거와 자격, 직무, 위촉절차 만을 명시하고 있어 제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실시주체, 제도 운영, 민간의 역할분담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필요가 있다.

### 2) 실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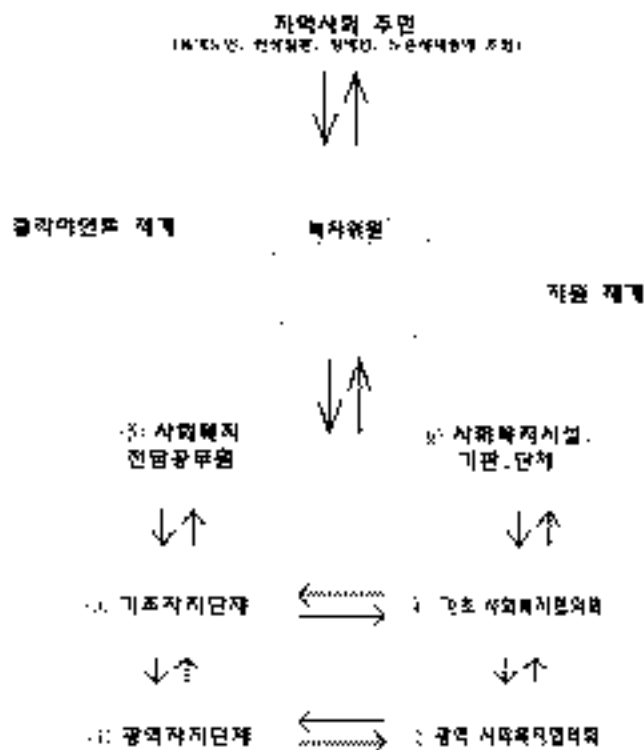
복지위원제도의 실시 주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시·군·구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민간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은 시·군·구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해 나가야 할 것이다(박태영, 2003). 결국 이 제도 실시의 주체는 시·군·구가 되고 주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복지위원제도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주체를 제시해 보면, 광역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시·도), 광역단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광역 사협)가 포함될 수 있으며 기초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구·군)를 포함하고 실행기구로서 기초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기초 사협)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 사협은 2003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29.7%인 69곳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기초 사협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복지위원제도 추진위원회(가칭)'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 복지위원제도 추진위원회는 복지위원의 추천과 복지위원의 교육, 복지위원 활동평가 등 복지위원활동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복지위원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기초 사형의 설치·운영이 활성화 되면, 제도 도입 이후에는 기초 사형의 사업 단위로 이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관시키면 될 것이다.

### 3) 제도운영 체계

복지위원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구체적인 실시주체간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실시주체간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복지위원제도 운영체계를 구성해 보면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복지위원제도 운영체계

복지위원의 역할 수행은 <그림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구분(광역 혹은 기초단위)에 의한 지역내 혹은 지역간 실시주체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과 해당 주체의 역할 정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복지위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각 실시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광역자치단체 : 조례제정, 재원 마련, 제도 운영 지침 마련, 제도 운영 담당 부서 지정 등
- ② 광역사회복지협의회 : 복지위원제도 운영 계획 수립, 복지위원 교육, 광역단위 복지위원협의회 개최 등
- ③ 기초자치단체 : 구·군 조례 제정, 복지위원 임명, 복지위원 활동 인정·보상책 마련 등
- ④ 기초단위 복지위원제도 도입 위원회(이후 기초사회복지협의회 담당) : 사회복지협의회 : 구별 복지위원제도 관리전반 진행, 기초단위 복지위원 교육, 복지위원 활동 평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복지위원 추천, 복지위원 활동 연계·협력, 복지위원 활동지원 등
- ⑥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 복지위원 추천, 복지위원 활동 연계·협력, 복지위원 활동지원 등

## 2. 위원 구성

### 1) 위원의 자격

복지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며 실정에 밝은 사람,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계자가 요보호자와의 연결매체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반장 외에 이웃주민,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의료기관, 지역 기업, 사회복지기관의 각종 위원회와 주민조직 참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통반장이 복지위원직을 겸직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과 자칫 지역주민들에게 권력으로 비취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됨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복지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통반장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

## 2) 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하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장기화 될 경우 활동이 자칫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정착 시까지는 임기를 보다 짧게 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필요 인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47,925,418명이고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90,000명(2002년 10월 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반영해 볼 때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지원인력 1인당 부과 요보호자수 평균 39.44명에 평균 가족수 3.3명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지역주민 약 4,487명당 복지위원 1명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평균 인구가 약 16,000명이므로 동 단위당 2명~4명 정도로 복지위원을 선정·임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단위의 인구 및 수급자 수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복지위원 필요 인원은 일본의 민생·아동 위원이 최고 220~440세대당 1인 배치한다고 볼 때, 점차적으로 그 수를 늘여가야 할 것이다.

## 4) 직무

복지위원의 직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4항에 따라 ①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②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④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기타 관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일본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직무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여 조사한 결과, ①복지수요 파악, ②상담, ③복지정보의 제공, ④연락 통보, ⑤조정, ⑥생활지원, ⑦의견 제안 등의 직무내용 전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복지위원의 직무내용 중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주된 역할을 설정해 보면, 복지수요 파악, 상담, 복지정보제공, 연락·통보 등

의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역할은 조정, 생활지원, 의견 제안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직무내용은 복지위원의 활동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역할 수행 상에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지역성을 반영한 역할 조정이 요구된다.

### 3. 위원관리

#### 1) 임명 방식

복지위원의 임명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칫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각 구별로 지역사회 인구 10만명 당 1개의 지구(地區)<sup>2)</sup>를 설정하고 해당 지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의 관계자, 구청 실무자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 관리 담당

복지위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 담당자의 지정이 필수적이다. 복지위원의 관리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 사협이 이를 대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협에서는 복지위원의 관리를 위해 복지위원이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이 긴밀한 연계·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 개시에서 평가까지 활동 전반을 매뉴얼화 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 단위의 복지위원 교육과 복지위원간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지역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지역복지서비스의 단위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차용하여 지구(地區)의 개념을 인구 10만명당 규모로 설정하여 방안 마련에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 3) 인정과 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2항에서는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원은 명예라는 정신적인 보상을 받게 됨으로 자원봉사가 가지는 자아실현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로서 이 복지위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 보상책은 이 복지위원들의 활동을 무책임으로부터 탈피시키고 금전적인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생위원제도의 명패 부착, 수당 지급 등과 같은 인정과 보상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4) 복지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복지위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위원의 자조집단인 광역단위 복지위원협의회, 기초단위 복지위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광역단위 복지위원협의회는 광역사협에서 그리고 기초단위 복지위원협의회는 기초 사협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협의회를 통하여 복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위원 상호 교류증진을 통한 내실 있는 활동을 추구하여, 우수 사례를 홍보하며, 상호 격려하며 인정·보상하는 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제도 도입체계

이상의 복지위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체계를 설정해 보면 <표 V-1>과 같다.

끝으로 복지위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성 즉,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요보호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종의 사회복지시설·단체, 그리고 보건인력의 실태를 포함하지 못했으며 대구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위원제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 복지위원제도 도입 과정도

단계	과 제	실시 주체*					
		①	②	③	④	⑤	⑥
제1단계: 제도 도입기	1. 지역사회 요보호주민의 연결접점 파악		○				
	2. 지역사회내 관계자 욕구 파악 및 의식화		○			○	○
	3. 복지위원제도 도입 방안 마련		○				
	4. 복지위원제도 준비 위원회의 구성		○				
	5. 복지위원제도 도입 청원(시조례 마련)		○				
	6. 광역시·도 조례 제정	○					
	7. 광역시·도 재원 마련	○					
제2단계: 제도실행 준비기	8. 제도 운영(안) 마련 및 광역지자체에 제출		○				
	9. 제도 운영 지침 마련	○					
	10. 제도 운영 담당부서(및 담당자) 지정	○					
	11. 시·군·구별 관계자 의식화				○	○	○
	12. 시·군·구별 복지위원제도 도입 위원회 구성				○		
	13. 복지위원 활동 매뉴얼 마련		○				
	14. 시·군·구 조례 제정			○			
	15. 복지위원 활동 보상책 마련			○			
	16. 시·군·구별 복지위원 관리 방안 마련				○		
	17. 시·군·구별 복지위원 지원 네트워크 조직				○		
제3단계: 제도 실행기	18. 지역사회주민에 제도 홍보		○		○		
	19. 시·군·구별 복지위원추천위원회 구성				○		
	20. 지구별 복지위원 추천				○	○	○
	21. 지구별 복지위원 임명			○			
	22. 광역단위 복지위원 교육		○				
	23. 광역단위 복지위원협의회 조직		○				
	24. 기초단위 복지위원 교육				○		
	25. 기초단위 복지위원협의회 조직				○		
	26. 복지위원 활동 평가(안) 마련		○				
	27. 지구별 복지위원 활동 관리				○		
	28. 지구별 복지위원 지원 네트워크 조직				○		
	29. 복지위원 활동 연계·협력				○	○	○
	30. 복지위원 활동 지원					○	○
	31. 복지위원 활동에 따른 주민 피드백 수렴				○		
	32. 지구별 복지위원 활동 평가		○		○		

\* 실시 주체 : ①광역자치단체      ②광역 사회복지협의회      ③기초자치단체  
 ④기초 사회복지협의회(기초단위 복지위원제도 도입위원회)  
 ⑤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⑥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참 고 문 헌

- 박태영(2002), 지역사회복지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대구대학교 BK21 핵심분야 복지모형연구팀, 587-608.
- \_\_\_\_\_ (2003),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화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도전과 과제, 2003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워크샵자료집.
- 변재관 외(2000), 공공·민간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순(2002), 지역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초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8), 사회복지정책과제연구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부.
- 熊本民生委員・児童委員協議會(1999), 民生委員制度 創設80周年 記念雜誌, 熊本民生委員・児童委員協議會.
- 厚生省 社會・援護局 兒童家庭局(1999), 社會福祉用語辭典, 中央法規.
- 全國民生委員兒童委員連合會(1997), 地位福祉の時代の求められる民生委員・児童委員活動：活動強化方策.
- 全國社會福祉協議會(2002), 民生委員・児童委員必携 第47集 民生委員・児童委員活動の基礎知識, 全國社會福祉協議會.
- 全國社會福祉協議會, <http://www.pref.yamanashi.jp/fukushi/hokensom/>  
[http://www.shakyo.or.jp/zenminjiren/outline/ind\\_06-bd.html](http://www.shakyo.or.jp/zenminjiren/outline/ind_06-bd.html)